

##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

	승인일	시행일	승인권자
재정	2009.03.02	2009.03.02	투자전략위원회
1 차 개정	2009.08.18	2009.08.18	투자전략위원회
2 차 개정	2012.03.02	2012.03.02	투자전략위원회
3 차 개정	2012.06.28	2012.06.28	투자전략위원회

##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

2009.03.02 제정

2009.08.18 개정

2011.03.02 개정

2012.06.28 개정

**제 1 조 (목적)**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채무증권,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**제 2 조 (적용범위)**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중 채무증권,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 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데 적용한다.

**제 3 조(선정기준)** ① 회사는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(중개수수료)이나 수익(Value of Research)
  2. 거래 유형(예: 상장주식 블록매매, 장외주식매매, 파생거래, 채권매매 등)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
  3. 중개업자의 재무상황,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
- ② 중개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공 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, 다른 중개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높아서 아니 된다.
- ③ 회사는 중개업자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업자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투자중개업자 선정시 금융투자자협회가 정한 『적격기관 투자자 위험노출액 한도관리 모범규준』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파생상품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요건을 갖춘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중개업자의 시스템 및 펀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2011.3.02 개정)

**제 4 조 (평가항목 및 배점기준)**

① 국내상장 지분증권의 경우

구 분	법인영업	리서치	기타
세부항목	매매체결능력 시장정보전달능력 블록거래 등	세미나(정량·정성적) 이메일 Request 리서치서비스(컨퍼런스콜 등)	기타
배점합계	40%	50%	10%

②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(2011.3.02 개정)

구분	매매체결능력	정보제공능력	신뢰성	결제이행능력	기타
배점기준	35 점	35 점	10 점	10 점	10 점

**제 5 조(평가방법)**

① 국내상장 지분증권의 경우

1. 2 월단위로(혹은 분기별)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2. 평가주체는 주식운용담당본부(혹은 주식운용담당팀)에서 하되 주식 관련 리서치팀, 투자전략팀, 매매팀 등 연관부서 참여가능 함
3. 각 평가인원은 제 4 조 1 항의 세부요소들을 고려하여 각 항목에 대해 중개업자별 1~5 점의 평가점수를 부여 함
4. 각 평가인원별 가중치는 차등으로 부여할 수 있음
5. 중개업자별 최종 점수는 평가인원별가중치와 평가인원의 평가점수를 곱하여 산출하고, 상위 부터 5 그룹 각 5 개 중개업자로 등급을 분류함
6. 상기평가항목 이외 주식운용담당부서 내부합의 및 결재절차를 거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음

②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아래 원칙에 의거 평가 한다(2011.3.2 개정)

1. 매분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함
2. 평가주체는 채권운용담당본부(혹은 채권운용담당팀)에서 하고 배점 기준에 따라 5 점 단위로 평가점수를 부여하되 평가자별 점수를 단순산술평균 함
3. 당사 보유 및 매매내역을 시장 노출하는 해당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거래 정지 후 차기 평가에 반영 함
4. 중개업자 예탁결제시스템에 주문번호와 거래조건 등을 수기 입력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정정 혹은 삭제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트레이더는 해당 중개업자로부터 사유서를 징구 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고 차기 평가에 반영함

**제 6 조 (약정배분기준)**

① **국내상장 지분증권의 경우(2012.6.28 개정)**

1. 2 월별(혹은 분기별)로 수수료를 기준으로 함.
2.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5 개 그룹의 투자중개업자에 95%이상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3. 약정배분기준과 실제 약점금액 미세한 차이는 주식운용담당본부 (혹은주식운용담당팀)의 재량으로 인정함

② **국내상장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**

1. 국내상장 지분증권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5 개 그룹의 투자중개업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정배분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. (2012.6.28 신설)

③ **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(2011.3.2, 2012.6.28 개정)**

1. 거래액면 및 선물 계약 수를 기준으로 함
2. 평가결과에 따라 채권중개업자를 1~3 등급으로 분류하되 1 등급 10 개사, 2 등급 10 개사, 3 등급 5 개사 등 총 25 개사를 선정함. 선물사는 1~2 등급으로 분류하되 1 등급 3 개사, 2 등급 3 개사 등 총 6 개사로 분류함
3. 특정회사 최대 배정가능한도는 채무증권 등의 경우 등급별로 각각 총 약정금액의 20%, 15%, 10% 이내로 하며,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등급별로 각각 총 약정금액의 50%, 20% 이내로 함. 다만 거래횟수 등을 고려하여 약정 배분기준에 의한 약정이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 등급별 배분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배분 비율 초과사유를 약정기준 실행내역 등에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고 보관 한다.

**제 7 조 (적용의 제외) (2012.6.28 신설)**

- ① 제 3 조 내지 제 6 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약정배분 계획의 준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계회사별로 배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약정배분계획과 달리 위탁 할 수 있다. 이러한 매매내역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(제 1 호,제 2 호 및 6 호는 제외) 하고 보관 한다.

1. 국내상장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
2. 주식을 프로그램매매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
3.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
4. Block Trading 을 하는 경우
5. 자전, 이체를 하는 경우
6. 회사채 발행물, 기업어음증권의 경우
7.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에 의하여 준법감시인 및 CIO 의 승인을 받은 경우

**제 8 조 (보관 및 관리)**

- ① 신탁회계담당인원은 매 2 월 (혹은 분기별)로 제 4 조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내역과 전 2 월 (혹은 전분기) 실행내역 확인하고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리스크/컴플라이언스팀은 자산운용본부(해당부서)의 투자중개업자 평가및 약정 실행내역 자료를 5 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09 년 3 월 2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09 년 8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1 년 3 월 2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2 년 6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